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

편집 : 공 보 관 이 총 우

전화 72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25-6090

제 872 호

1981.11.25

시 보

차 례

◎ 훈 령

제 551 호 : 법규준비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 3

제 552 호 : 송무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 3

◎ 고 시

제 422 호 :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 3

제 423 호 :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변경 5

제 4 호 (종로구) : '82 시범가로광고물계획정비지구지정고시 5

제 68 호 (서대문구) : 광고물계획정비지구지정고시 6

제 116 호 (영등포구) : 광고물시범가로정비지구지정고시 6

◎ 공 고

제 241 호 : 우면산배수지사무소위치공고 7

제 326 호 :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(기간연기)공람공고 7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2115

제 32 호 :	공인개각승인 공고	8
제 328 호 :	공인신조사용승인 공고	8
제 330 호 :	도시계획시설에나름공립공고	10
제 425 호 (구로수) :	전기용품제조업허기취소공고	10

◎ 사 령

훈 령

서울특별시 법규정비심의회 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81년 11월 24일
서울특별시장

◎서울특별시훈령제 551 호

서울특별시법규정비심의회규정중개정령

서울특별시 법규정비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제 2 항중 "제 1 부시장"을 "부시장"으로 "기획관리관"을 "기획관리실장"으로 "주택국장, 도로국장"을 "선설관리국장"으로 한다.

제 7 조 제 1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 다만, 관계법령개정에 의하거나 종전의 방침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재·개정하는 경우와 사업이 완료되거나 여건변동등으로 인하여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송부심의회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81년 11월 24일
서울특별시장

◎서울특별시훈령제 552 호

서울특별시송부심의회규정중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송부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2 항중 "기획관리관"을 "기획관리실장"으로 "사무행정과장, 보건행정과장, 도로관리과장"을 "세정과장, 보건위생과장, 건설행정과장"으로 한다.

부 칙
이 훈령은 198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22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25 호(78.5.17)로 시설절정 및 지전승인된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도시

계획법 제 24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83호 (79.12.10)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증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11.25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: 서울특별시 증구
강충동 2가 197-11외 7필지

나. 사업의종류: 도시계획사업(학교):
: 동국대학교)

명 칭: 동국대학교 시설확충

다. 사업시행규모

(1) 지평면적: 32,252.4평방미터

(2) 건축계획: 건축면적 - 3,271.78
평방미터 (건물 2동)

연면적 - 14,751.64평방미터

층 수 - 지하 1층, 지상 5층 1동

지하 1층, 지상 3층 1동

구조 - 철근콘크리트 라멘조

용도 - 교 사

라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: 서울특별
시 증구 필동 3가 26

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박기종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(1) 착수년월일: 하가일로부터 15일이내

(2) 준공예정일: 1983.10.30

바. 위치도및계획평면도: 별첨(도면생략)

사. 사용할 토지

지	번	지	목	면	적
증구	강충동 2가 산 7-9	공	원	1,266	평방미터
"	" 산 7-14	"	"	5,098	평방미터 중 4,846.3 ㎡
"	" 산 7-20	"	"	2,053	평방미터
"	" 산 7-33	"	"	1,855	평방미터
"	" 산 7-34	"	"	995	평방미터
"	" 산 7-35	"	"	969	평방미터 중 188.4 ㎡
"	" 산 7-45	"	"	850	평방미터 중 575.2 ㎡
"	" 197-11	대		20,648.7	평방미터 중 20,473.5 ㎡
	계 8 필			32,252.4	평방미터

아. 토지소유자: 학교법인 동국학원 (수용할 토지없음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3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 변경 허가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0 호 (81. 6. 9) 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 허가된 성북구 돈암동 173-1 외 29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 12. 10)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 허가 변경하였 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11.26

서울특별시 장

가. 사업시행지 : 성북구 돈암동 173-1 외 29 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 사업 (학교) 시행 변경
학교법인 성신학원 특별교실 (중학교용)

다. 규모 및 면적

1) 당초 : 건물 1 동
(바닥면적 438㎡)

2) 변경 : 면적 : 70,769㎡
(21,401.66평)

규모 : 건물 1 동 (1-3층)

연면적 (1,244.1㎡)

라. 시행자주소, 성명 : 성북구 돈암 동 173-1

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 이 숙 중

마. 공사기간

당초착공 및 준공 : 81.7.8- 82.6.30

변경착공 및 준공 : 81.7.8- 82.12.30

바. 위치 및 계획평면도 : 별첨 (도 면생략)

-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에 보관함.

◎ 종로구청 고시 제 4 호

종로구광고물계획정비지구지정고시

1.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규칙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계획정비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.

2. 계획정비지구내의 모든 광고물은 고시일로 부터 신규제시 (제첨) 및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.

3. 관계도서는 구청 전설관리과에 비치 공람한다.

1981.11.20

종로구청 장

- 계획정비지구 -			
구 간	노선명	연 장	비 고
창신동 444-14- 송인동 1256 도로양측	왕산로	1,350미터	가시권포함.
<p>◎ 서대문구청 고시 제 68 호</p> <p>서대문구광고물계획정비지구지정고시</p> <p>1.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계획정비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.</p> <p>2. 계획정비지구내의 모든 광고물은</p>		<p>고시일로부터 정비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신규계시 및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.</p> <p>3. 관계도서는 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 공람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1.11.24 서 대 문 구 청 장</p>	
- 계획정비지구 -			
구 간	연 장	비 고	
봉원사입구(대신동 124-19) 사원교(연희동 446)간 연대입구(창천동 31-3) 신촌역(창천동 18-42)간	5 km	도로 좌우전면 건물부분 (도안별첨)	
<p>◎ 영등포구청 고시 제 116 호</p> <p>영등포구광고물시범가로정비지구지정고시</p> <p>1.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계획정비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한다.</p> <p>2. 계획정비지구내의 모든 광고물은</p>		<p>고시일로부터 정비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신규계시 및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.</p> <p>3. 관계도서는 건설관리과에 비치 공람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1.11.20 영 등 포 구 청 장</p>	

제 872 호

시

보

1981.11.25

12-7

계 획 정		비 지 구
구 간	연 장	비 고
영동포충심가	1,800	영동포역 - 도노공원 - 시장로타리 좌우전면 - 당산전화국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41 호

우면산배수지사무소 위치공고

1981. 11. 9 실시되는 우면산배수

지사무소 위치를 다음과 같이 공고
함.

1981. 11.

서울특별시장 박정수

구 분	사 업 소 명	위 치	개소일자	비 고
시 실	우면산배수지사무소	강남구서초동 278	81.11.9	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326 호

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(기간연
기) 공람 공고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영동 1
추가지구, 김포지구 및 예술인지구에
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1 조
및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
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(기간연기) 하

고자 동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
하여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
14 일간 공람에 공한다.

2.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
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
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개별통
지는 아니하고 본 공고로 갈음
한다.

1981.11.24

서울특별시장

(사업계획 변경 내역)

지구명	인가면적	시행자	사업시행기간		비고
			기정	변경	
영동1추가지구	869,815㎡	서울특별시장	72.12.28 81.12.31	72.12.28 82.12.31	1년연장
김포지구	4,706,314㎡	.	68.1.23 81.12.31	68.1.23 82.12.31	.
예술인지구	17,289㎡	예술인토지 구획정리조합	78.4.22 81.12.31	78.4.22 82.12.31	.

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327 호

공인개작사용승인 공고

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
개작 사용 승인하고 서울특별시 공
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.

1981. 11. 23

서울특별시장

1. 공인명 :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
사업소장의인
2. 사용개시일 : 81.11.25
3. 공인의인명 : 다음

인
영



공인명

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
장의 직인 및 제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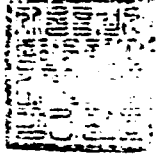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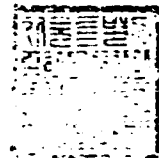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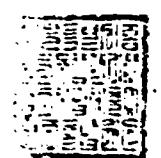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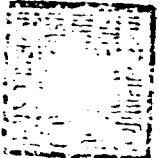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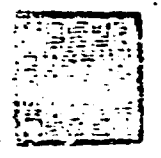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328 호

공인신조사용승인 공고

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
신조 사용 승인하고 서울특별시 공
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.

1981. 11. 23

서울특별시장

<p>1. 공인명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인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부 임경리관인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물 품관리관인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물 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징수 관인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수 입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부 임지출원인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세입 세출외 현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제인</p>		인 영		
		공인명	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부임경리관인	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물품출납원인
		인 영		
		공인명	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징수관인	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부임지출원인
		인 영		
인	 	공인명	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	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물품관리관인
영		인 영		
공인명	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의 직인 및 제인	공인명	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수입금출납원인	

2. 사용개시일 : 81. 11.

3. 공인의인명 : 다음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330 호

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공람공고

1. 당시 81년도 제 4차 도시계획위원회
회를 개최코자 도시계획법 제 16조
2 및 동법시행령 제 14 조의 2의 규
정에 따라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
이 공고하고 아래 장소에서 14일
간 공람에 공한다.

2. 공람중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
의견이 있을때는 본 공람기일내에
서면으로 의견을 공람장소에 제출
바란다.

가. 공람기간: 자) 81.11
 지) 81.12

나. 공람장소: 성북구청 도시정비과

1981. 11. 25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

공 랑 개 요 (도시계획안)

구 분	도시계획사안	위 치	규 모	비 고
도 로	소방도로시설	성북동 231-2 일대	B = 8 m L = 650 m	
"	"	상월곡동 7-149 일대	B = 6 m L = 62 m	
미관지구	4종미관지구시설	성북동 35-27 일대	B = 15 m L = 1,650 m	서북로양측
"	"	석관동 332- 번동 98 일대	B = 15 m L = 2,200 m	강석로양측
" (기정)	4종미관지구(기정)	수유동 679 - 미아동 구계간	B = 15 m L = 4,000 m	삼양로양측
미관지구	" (변경)	수유동 679 - 길음동 1077	B = 15 m L = 4,020 m	"

◎ 구로구 공고 제 425 호

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4 조에 의한

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물 다음과
같이 취소하고 동법 제 26 조에 의
거 이를 공고한다.

1981. 11. .
서울특별시장

다

음

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허가번호	제조구분	취소사유
유신전기	정정주	구로구신도림동 279-1	1-5-20	소형단상변압기 류 제조사업	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24 조 위반

사 령

◎ 1981년 11월 9일자 령제 468 호

기획관리관시점연구담당관 이 동
지방별정직 3 급상당

지방별성직 3 급상당에 임함.
기획관리실 시점연구관에 포함.

◎ 1981년 11월 18 일자 령제 472 호

치 수 과 송 득 범
지방토목기과
상, 하수도 치수과 (군복무휴직)

주택 행정 과 김 동 환
지방건축기과

전설관리국 건축지도과 (군복무휴직)

종합운동장건설본부 임 계 호
지방건축기과

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(군복무휴직)

◎ 1981년 11월 24 일자 령제 477 호

종로구색무기과 임 실 녀
지방행정주사보

상하수도 근무를 명함.

은평구수도 1 과 송 광 호
지방행정주사보

도봉구 근무를 명함.

관악구재무과 진 재 윤
지방행정서기

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파견근무
(81.11.24~82.11.23)

<p>◎ 1981년 11월 25일자 령제 479 호</p>	<p>령제 481 호</p>
<p>도시가스사업소 공무과장 김 영 결 지방토목기과시보</p>	<p>운 수 1 과 이 재 오 지방행정주사</p>
<p>관악구</p>	<p>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 항 제 2 호에 의거 직위해제</p>
<p>관악구수도공사 과장 유 지 중 지방토목기과</p>	<p>운 수 1 과 박 종 인 지방행정주사</p>
<p>도시가스사업소 공무과장 령제 480 호</p>	<p>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 항 제 2 호에 의거 직위해제</p>
<p>종합건설본부공사 3 부 김 복 등 지방전기기과</p>	<p>운 수 1 과 최 영 환 지방행정주사</p>
<p>지하철운영사업소 과견 (81.11.25-82.5.31)</p>	<p>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 항 제 2 호에 의거 직위해제</p>
	<p>서울특별시</p>